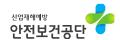
2015-교육미디어-775

현장작업자를 위한

하역운반기계 작업안전





CONTENTS

-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개요
- 2 하역운반작업안전
- 3 재해사례와예방대책

1

차량계하역원반기계개요

- 지게차
- 화물자동차
- 구내운반차



지게차

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게차, 구내운반차, 화물자동차 등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기계를 말함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편 안전기준,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, 제10절 「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」에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

❖ 지게차 특성

- 지게차는 차체의 앞에 화물 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
-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하역운반기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사망재해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



지게차

❖ 주요 지게차 작업 시 위험성

위험성	원 인
화물 떨어짐	 불안전한 화물의 적재 부적당한 작업장치 선정 미숙한 운전 조작 급출발, 급정지 및 급선회
끼임 및 부딪힘	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시야의 악조건 (특히 대형화물) 후륜주행에 따른 하부의 선회 반경
차량 넘어짐	 요철 바닥면의 미정비 취급되는 화물에 비해서 소형의 차량 사용 화물의 과적재 급선회





지게차

❖ 지게차 방호조치

전조등 및 후미등

-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됨. 단,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외
 - ※ 전조등 : 지게차를 사용한 야간 작업 시 안전작업을 위한 조명확보
 - ※ 후미등 : 후진 시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게차의 위치표시를 위한 안전장치







지게차

❖ 지게차 방호조치

헤드가드

- 적합한 헤드가드(head guard)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됨
 - ※ 헤드가드 : 화물의 낙하, 비래에 대해 지게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





백레스트

- 백레스트(backrest)를 갖추지 않은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됨. 다만,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제외
 - ※ 백레스트 : 포크 리프트 마스트의 후방으로 적재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





지게차

❖ 지게차 방호조치

팔레트

- 지게차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(Pallet), 스키드(Skid)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
 -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
 - 심한 손상·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

좌석 안전띠의 설치 및 착용

•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





화물자동차

❖ 화물자동차 특성

-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,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<<u>자동차관리법 제3조(자동차의 종류</u>)>
- 화물차량 운전원은 각종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특정 목적지까지 운반하거나, 다른 자동차의 견인·구난작업 또는 특수작업을 하는 근로자 (한국표준직업분류로는 화물차 운전원과 특수차 운전원이 이에 해당)

❖ 화물차량 상·하차 작업의 재해

-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화물차량 중 일반화물차 관련 재해자 및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음
- 재해자는 상 하차 작업에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는 차량운전 작업에서 가장 많음
- 상·하차 작업 시 주요 위험 요인 : 화물 적재 중에 떨어짐, 적재방법의 불량으로 화물이 떨어짐, 무리한 화물 적재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



구내운반차

- 하역 운반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서, 주로 사업장 내에서 주행하는 운반차 등을 말함. 또한「구내 운반차」에는 견인 차량에 의해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방식, 3륜차 방식 및 근로자가 주행하면서 운전하는 방식이 포함
- 구내운반차(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)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~185조)
 -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
 - 경음기를 갖출 것
 -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이상일 것
 -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
 -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. 단,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제외
 -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









- 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-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
- 운송용 차량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사고 방지
- 작업장 내 차량 안전운행 가이드
- 주요 하역운반기계 운반 안전수칙
- 중량물 인력 취급에 따른 안전조치



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❖ 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특별안전보건 교육의 실시

- 『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』을 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
- 화물하역운반 작업과 연계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.

산업안전 ·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

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
	해당 작업 종사 일용근로자	2시간 이상
특별교육	해당 작업 종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	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)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

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
작업의 종류	점검내용
양중기의 와이어로프 · 달기체인 · 섬유로프 · 섬유벨트 또는 훅 · 샤클 · 링 등의 철구(이하 "와이어로프등")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	•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
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	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· 후미등 ·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


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❖ 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
12.0	}	
STATE OF THE PROPERTY OF THE P	A	
~	7	

작업의 종류	점검내용
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	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· 후미등 ·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
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	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바퀴의 이상 유무
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	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카바이드 · 생석회(산화칼슘)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
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	양화장치(揚貨裝置)의 작동상태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
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	 훅이 붙어 있는 슬링 · 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슬링 · 와이어슬링 등의 상태(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)



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❖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안전작업 실시

- 차량계하역운반기계(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도로상의 주행작업 제외)를 사용하는 작업, 중량물의 취급작업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위험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
-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가 알도록 교육, 주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

작업명	작업계획서 내용
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	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· 낙하 · 전도 ·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
중량물의 취급 작업	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
-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
 - ※ 단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예외 적용



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❖ 일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해 · 위험 예방조치

전도 등의 방지

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 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

접촉의 방지

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 금지조치 단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하는 경우 예외.













대형 후사경(Side mirror)



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❖ 일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해 • 위험 예방조치

화물적재시의 조치

-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 조치 실시
-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
-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
-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



치우치지 않고, 시야확보



체인으로 고정





포크위치 표기(운전자가 알 수 있게)



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❖ 일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해 • 위험 예방조치

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

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. 단,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

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

-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며,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·관리 및 그 밖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
 - ※ 허용하중: 지게차의 구조, 재료 및 포크·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.
- 구내운반차,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







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❖ 일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해 · 위험 예방조치

탑승의 제한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화물자동차 제외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제한. 단,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예외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제한. 단,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 예외



제한속도의 지정 등

 차량계 하역운반기계, 차량계 건설기계(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km이하인 것 제외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,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



화물 취급 등 하역운반 일반 안전조치

❖ 일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해 · 위험 예방조치

운전자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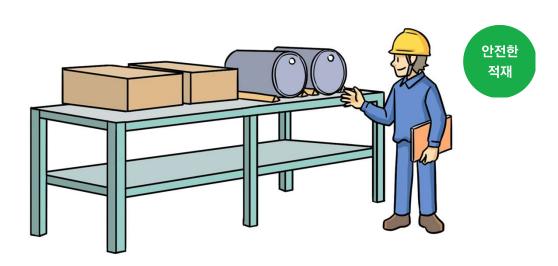
- 포크, 버킷,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둠
-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 또는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
-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킴. 다만,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





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

- 적재 및 하역 구역은 다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
- 다른 차량 등 교통이 없어야 하며, 보행자 및 기타 사람들이 적재 및 하역작업에 섞이지 않도록 조치
 - 전선, 파이프 및 기타 위험한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
 -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단단하고 평탄한 바닥에 적재 및 하역작업
- 적재 및 하역 작업 동안 화물은 가능하면 고르게 나눔.
- 화물이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놓는다. 선반(Rack) 사용하여 안정성 확보





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

- 적재 및 하역 작업 시작 전에 견인차 및 트레일러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, 모든 안정보조장치(Stabilizer)가 적절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확인
- 작업장에 따라서 고소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대, 안전모를 사용
- 운전자들이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대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
- 차량에 과적 금지. 과적 차량은 불안정하며, 차의 운전 및 제동이 어려움
- 적재 전에 현장 바닥 및 데크(Deck)를 점검하여 안전한지 확인
- 적재할 때, 나중에 어떻게 하역할 것인지 생각
- 후면과 측면 하역 게이트(Tailgate 및 dropside)는 닫혀 있어야 함. 적재물의 돌출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명확히 표시
- 하역 전에 운송 동안 화물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며, 고정 장치를 제거할 때 화물이 움직이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
- 운전자가 실수로 차량을 너무 빨리 출발해 버리는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 실행
 - 신호등(Traffic light) 사용, 견인차 또는 트레일러 차량 제한장치(Restraint) 사용, 차가 움직여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적재/하역 담당자가 자동차 키 또는 서류를 갖고 있는다.



운송용 차량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사고 방지

❖ 차량에서의 떨어짐 재해의 주요 원인

- 적재칸의 미끄러운 바닥, 접근 발판의 손상 및 마모
- 적재칸 바닥의 빗물, 오일, 흙 혹은 얼음
- 부적절한 안전화 착용
- 조명, 바람 혹은 우천, 소음 등의 작업장 주변 환경
- 작업자의 피로와 소진된 체력



❖ 근로자 준수사항

-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세우고 브레이크를 채움
- 차량 작업 시에는 발에 잘 맞는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
- 안전화 바닥에 붙은 이물질은 즉시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.
- 적재/하역 시 작업안전지침을 따름
- 정기적인 안전교육훈련을 받으며, 탱크로리 차량이나 테일 리프트차량(Tail-lift)와 크레인 탑재차량(Lorry loader crane) 등의 특수 차량에서의 작업은 사업주가 정한 안전작업지침을 따름
- 사다리, 발판을 이용하여 적재칸의 화물을 하역할 때,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※ "운송용 차량"은 구내 운반차, 화물자동차, 지게차처럼 작업장에서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



작업장 내 차량 안전운행 가이드

❖ 차량의 후진

- 작업장에서 차량과 관련된 사망 사고는 주로 차량이 후진할 때 발생
- 차량 후진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방 통행식(Drive-through) 선적 및 하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후진의 필요성을 아예 제거하는 것
- 후진 구역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도록 함
- 차가 후진할 때 울리는 경고음, 플래쉬, 경고등과 같은 장치를 사용

❖ 차량 신호수(Signaller)

- 적절한 훈련을 받은 신호수만을 배치고, 운전자는 차량 신호수를 시야에서 놓치면 차를 즉시 멈춤
- 차량 신호수는 다음 사항을 수행

√사전에 운전자와 합의한 대로 명확한 신호 시스템을 사용

√항상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

√후진 차량을 안내할 때 안전한 곳에 위치

√ 빛을 반사하거나 형광색 조끼 등 눈에 잘 띄는 의복을 착용하고

운전자에게 신호가 잘 보이도록 조치





작업장 내 차량 안전운행 가이드

❖ 주차

- 차량은 가능하면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
- 운전자는 주차시 다음 사항을 수행

```
      √ 브레이크 작동
      √ 엔진을 정지

      √ 시동키를 빼고 안전한 장소 보관
      √ 장비를 안전하게 처리
```

• 경사면에 주차할 경우,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며, 가능한 경우 기어를 넣은 상태로 두고, 바퀴 고임목 사용



주요 하역운반기계 운반 안전수칙

❖ 지게차 운반 안전 수칙

- 운반물의 근처에 왔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, 운반물 앞에서는 일단 정지
- 적치 장소에서 운반물의 무너짐,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
- 지게차를 운반물 쪽으로 반듯하게 향하고 포크를 끼워 넣는 위치를 확인. 이때 포크가 팔레트를 문지르거나 마찰하지 않도록 주의
-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작업자와 전도방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신중히 작업
-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까지 운반물을 들어 올린 후 일단 정지
- 하물의 안전상태,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
- 화물적재 상태에서 30cm 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 금지
-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, 주행
- 급출발이나, 급브레이크 조작, 급선회 등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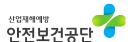


주요 하역운반기계 운반 안전수칙

❖ 지게차 운반 안전 수칙

-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,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 화물에 가려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실시
 -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유도
 - 후진으로 진행
 - 가벼운 것은 위로,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
 - 도로상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,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
 - 포크 또는 팔레트, 스키드, 균형추(Counter balance) 등에 사람을 태운 상태로 주행 금지





주요 하역운반기계 운반 안전수칙

❖ 화물자동차 안전 수칙

- 작업자 승·하차 시 발 디딤대를 장착하여 팔과 손목에 발생하는 과도한 힘을 감소시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제거
- 적재함 도어의 시건장치 등은 운행 중 열림 방지를 위해 출발 전 확실히 체결하고 풀림 방지조치 실시
- 화물 유동에 의한 떨어짐 방지를 위해 로프 결속 철저 및 운행 중 적재함 상태 수시 확인
- 주정차 시 주차브레이크 사용, 경사로 주·정차 시 고임목 병행 사용
- 후진 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후진 경고하며 운전
- 도로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
- 핸드폰 통화, DMB 시청, 동승자의 잡담 등 사고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행동은 자제

- 도로 요철지역은 과도한 흔들림에 의한 운전자 신체부담, 요추 충격, 적재화물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절대 감속운행
- 장시간 운전을 감안하여 운전자 좌석에 요추 보호대, 등받이를 설치하고 유압식 좌석 충격흡수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 실시
-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과 운전자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 중간에 적절한 휴식 실시
- 운행 중 엔진 과열 등에 의한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운전석 등 신속한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소화기 비치



주요 하역운반기계 운반 안전수칙

❖ 구내운반차 안전 작업수칙

- 차량 통행로에 무단주정차 금지
- 허가 구역 이외의 장소통행 및 불필요한 운행 금지
-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 후 위험을 살핀 후 주행
- 운전자는 좌석안전띠, 안전모,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운행
- 앞지르기 및 과속, 난폭운전 금지
- 후진시 전후방주시 및 좌우확인 등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
- 보행자 보호운전을 실시
- 안전표지 지시에 따름
- 등화조작을 정확히 실시



중량물 인력 취급에 따른 안전조치

- 중량물 운반취급 시엔 가급적 하역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를 사용
-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구름 멈춤대, 쐐기 등을 이용해 중량물을 고정
- 중량물의 구름 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
-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 운반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
- 중량물 취급 근로자에게 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
-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안내표시
-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빈도에 따라 적정한 시간 휴식
-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, 갈고리 등 보조기구를 활용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











③ 쪼그리고 앉는다.

4 안정되게 잡는다.

⑤ 다리를 이용해 들어올린다.



자해사례와 예방대책

- 지게차 후진 중 동료작업자와 부딪힘
- 경사로에서 지게차가 넘어져 운전자가 지게차에 깔림
- 지게차 포크의 팔레트와 CNC에 끼임
- 지게차 후방에 탑승한 화물차 운전자가 폐목에 부딪힘
- 화물차량 덮개 씌우기 작업 중 로프 파단으로 떨어짐
- 적재함에서 체인블록 해체 중 떨어진 H빔에 맞음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 중 떨어짐



지게차 후진 중 동료작업자와 부딪힘

▶ 주요 재해 내용

3톤 지게차 운전자가 섬유원단 보관창고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중 동료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다 부딪힘





-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운전
-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
- 지게차 후진 시 시야확보 미흡



- 유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
 - ※ 3톤 이상: 지게차 운전 기능사(국가기술자격증)
- ※ 3톤 미만: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(시・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발급)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
 작성 및 주지
 - 해당 작업의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 • 작업방법 포함
- 운전석에서 확인 가능한 지게차 후방 경보장치 및 후방 카메라 설치

경사로에서 지게차가 넘어져 운전자가 지게차에 깔림

▶ 주요 재해 내용

퇴비 비료 생산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비닐 롤을 운반하던 중 경사로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며 작업자가 지게차와 바닥 사이에 깔림





- 지게자 무자격자 운전 및 좌석안전띠 미착용
- 경사로로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유도하는 사람 미배치



- 지게차 유자격자가 운전하도록 관리 철저
-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고, 작업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



지게차 포크의 팔레트와 CNC에 끼임

▶ 주요 재해 내용

철판절단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CNC 레이저 절단기 베드 앞에 지게차를 정차시킨 후 절단된 부품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지게차가 작업자 쪽으로 전진하면서 CNC레이저 절단기 베드와 지게차 포크 팔레트 사이에 끼임





지게차 포크의 팔레트와 CNC에 끼임

▶ 주요 재해 내용

철판절단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CNC 레이저 절단기 베드 앞에 지게차를 정차시킨 후 절단된 부품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지게차가 작업자 쪽으로 전진하면서 CNC레이저 절단기 베드와 지게차 포크 팔레트 사이에 끼임



- 지게차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실시
- 지게차(7톤) 운전 무자격자에 의한 운행으로 조작 미흡



-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갑작스런 주행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,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예방대책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며,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
 - 작업 전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,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, 바퀴, 전조등 • 후미등 •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 또는 기타 조치 실시
 - 지게차 운전시 유자격자가 운전하도록 관리 철저



지게차 후방에 탑승한 화물차 운전자가 폐목에 부딪힘

▶ 주요 재해 내용

폐목재 보관 장소에서 폐목재를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하여 3.5톤 지게차로 운반 중 폐목재가 지게차 후방으로 떨어져 지게차 후부에 균형추(카운터 웨이트, Counter Weight)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폐목에 맞음





지게차 후방에 탑승한 화물차 운전자가 폐목에 부딪힘

▶ 주요 재해 내용

폐목재 보관 장소에서 폐목재를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하여 3.5톤 지게차로 운반 중 폐목재가 지게차 후방으로 떨어져 지게차 후부에 균형추(카운터 웨이트, Counter Weight)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폐목에 맞음



• 안전하중을 초과한 적재물을 운반중 지게차의 후륜이 들리자 적재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전기사가 승차석이 아닌 지게차 후면(카운터 웨이트)에 탑승 후 불안전하게 적재된 폐목재가 떨어짐

※ 폐목재(폐목, 팔레트 등 더미): 3,500mm(W) X 2,300mm(L) X 3,200mm(H), 총중량 약 2,000kg

- 지게차 마스트 높이를 초과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적재물을 싣고 운반작업 실시
- 지게차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작업자 탑승



- 지게차의 안전하중을 고려한 적재물 운반 : 적재물의 하중 중심이 전륜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허용하중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안전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
- 예방대책 준수사항 - 적재물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가리지 않는 적정 높이로 제한하고, 부득이한 경우라도 마스트 이상으로 적재하지 않으며, 전방시야를 가릴 경우 신호수를 두도록 조치
 -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작업자 탑승 금지 실시
 -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수행 및 그 내용은 당해 작업자에게 교육 실시



화물차량 덮개 씌우기 작업 중 로프 파단으로 떨어짐

▶ 주요 재해 내용

제품 출하장에서 지게차로 화물 차량에 타이어를 상차한 후 적재물 보호덮개를 씌우는 작업중 작업자가 차량 적재물에 올라가 덮개 고정 중 고무로프가 파단되면서 지면으로 떨어짐





• 부적합한 로프 사용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



- 화물차량에 사용하는 짐걸이 로프는 섬유로프를 사용하고,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섬유로프는 교체
- 화물차량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과 적재함의 짐 상면 사이에 안전하게 승강하는 설비를 설치
- 차량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떨어짐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· 착용



적재함에서 체인블록 해체 중 떨어진 H빔에 맞음

▶ 주요 재해 내용

트럭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H-beam을 하역하기 위해 짐걸이로 사용했던 체인블록을 해체하는 순간 2단으로 적재된 H-beam을 받쳐 두었던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차량 하부로 떨어져 H빔에에 맞음





• 화물 적재방법 불량 및 화물 적재상태 미확인



- H빔의 중량이 약 1.5톤으로 하부에 받침목 설치 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물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의 받침목 설치
- 적재된 화물 하역작업시 짐걸이로 사용한 로프, 체인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 시 적재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 실시



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 중 떨어짐

▶ 주요 재해 내용

다른 밭으로 이동하여 감자 심기작업을 위해 경사진 장소에 세워진 화물차의 적재함에 4명이 탑승하여 운전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화물차가 약 40m 아래 저수지로 굴러 내려가자 적재함에서 뛰어내리거나 화물차와 함께 저수지로 떨어지며 부상





 경사 장소에 주차한 상태에서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차석이 아닌 적재함에 탑승 중 차량이 움직임



-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,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
 - 경사진 곳에는 차량바퀴에 고임목을 설치
-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, 부득이 하게 탑승 시 방호울 등 떨어짐 방지 조치 실시



감사합니다.

